





##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김은정\*

### 〈요 약〉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제2대 서정학·제3대 김국진·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 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 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주제어 :** 제1·2공화국,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 경호사

이 논문은 2013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 kej@yongin.ac.kr

목 차
<p>I. 서 론</p> <p>II. 대통령 경호책임자</p> <p>III.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대통령경호대</p> <p>IV. 결 론</p>

## I. 서 론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는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였다는 측면 외에도 한국 경호의 근대화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를 떠올릴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의 근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제1·2공화국의 경호 활동을 되짚어봐야 한다. 근래에 비해서 권력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이루어지는 경호 활동이 결국 경호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으로 정착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제1·2공화국의 경호와 관련된 사실과 그 의미를 진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경호 인식의 역사적 근원도 함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에서 제1공화국은 몇몇 인물들의 과오로 인해서 그 평가 자체를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이 한국의 첫 번째 공화헌정체제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제1공화국부터 시작된 대통령 경호는 역사적 측면에서 주시해야 한다. 그동안 제1·2공화국의 경호사에 대한 언급은 김두현(1995: 123~124)의 저서를 기반으로 김창호(2006: 265~267), 이민형 외3인(2008: 109~110), 박장규(2010: 86~89) 등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매우 부족하였다. 게다가 김창호(2001), 장철원·김상진(2006), 이성진 외 2인(2007), 이성진(2008), 김형중(2013) 등도 삼국시대

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기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제1·2공화국의 경호사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기존의 한국 경호사 연구에서 오늘날 경호 제도의 양상과 직결될 수 있는 근현대의 경호사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이 드러난 관보, 법령집, 회고 및 잡지·신문기사 등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논하지 않았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과 대통령 경호를 전면에 표방한 내무부 훈령 제52호 「대통령경호특별수칙(大統領警護特別守則)(1953)」,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의 폐지 이후에 전문적인 대통령 경호기관 설치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발족이 공포되었던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에 관해 확인하였다. 또한 대통령 경호를 수행했던 경호책임자에게 부여된 정치권력을 포함하여 경무대 경찰서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활동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경호 인식 속에 내포된 점도 인지하였다. 여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아보게 되었다.

## II. 대통령 경호책임자

### 1. 제1공화국의 정치권력과 광영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분석한 The Heritage Foundation(2000)의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The Keys to a Successful Presidency)』 중에는 “대통령과의 근접성이 곧 권력의 원천”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장성민 역, 2002: 88).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통령의 근거리에 위치해있는 경호원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 속에 정치권력은 쉽게 연상되었고, 한국의 제1공화국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경호원이 정치적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여건도 다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와 정치권력 간의 연관성이 생성되는 결정적인 발단으로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였던

곽영주를 떠올리게 된다.

곽영주는 이승만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유명한 ‘부(副) 부통령’이라는 별명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밀했던 이정재 등의 ‘정치깡패’를 비호하였고, 4.19에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죄로 제2공화국 때 구속되어 1961년 12월 21일 교수형에 처해지는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4.19 이후 못볼 터지듯 쏟아졌던 대통령 측근 비리의 핵심인물로 알려지면서 표적이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비서정치(秘書政治)’라고 비판하며 다른 비서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곽영주만은 “일개 경무대 직속 경무관”에 불과하다면서도 그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놓고 질타하였다.

이승만 정권 12년은 비서정치였다고도 한다. ... 수석비서관, 비서관이건, 비서건 간에 「경무대」라는 관칭삼자(冠稱三字)만 붙으면, 천하를 주름잡으면서 할보·황해도도 크고 작은 벼슬아치들은 벌벌 떨었다. ... 경무대비서 가운데도 박모(朴某)·유모(俞某)·구모(具某) 등이 널리 세간에 알려진 인물들. 그들이 얼마나 치부(致富)를 했고 안했고는 미지수다. 하지만 요사이 사직의 문초를 받고 있는 박모(朴某)는 이것저것 부정혐의는 농후하나 방증을 못잡았다해서 소환만 되풀이하고 있는 눈치이다. 그렇지만, 일개 경무대 직속 경무관이었던 곽영주가 빨당을 몇 개인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재를 했다하거든...

(동아일보, 1960년 6월 7일)

이렇듯 제1공화국의 모든 과오를 곽영주에 대한 책망으로 일소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책임자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2016)에는 제1공화국의 역대 경호책임자로 김장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2016)에도 제1·2공화국의 경호책임자에 대한 내용 없이 제3공화국 이후부터 역대 정부별 경호실장·경호처장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실(2013)의 홍보 책자에서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 창설을 기준으로 삼으며, 제1·2공화국 경호에 대한 내용 일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광래(2012: 81~83)가 곽영주를 거론했을 뿐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 경호사 속에서 경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곽영주’에 대한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가 한국의 대통령제와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경호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책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소홀하였음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영주의 여파로 인해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되었으며, 정치권력과 결탁되었다는 관념이 대통령 경호책임자에 대한 언급조차 외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호학의 한 영역으로서 경호사를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공과 이전에 경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제1공화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에 대한 다양한 사실은 물론이고 광영주 이전의 경호책임자들에 대한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 2.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책임자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책임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1공화국 때 경무대 경찰서장에서 비롯된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존재는 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경호와 연계된 역사 기록이다. 제1공화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박성환(1969: 94~97)은 광영주 이전에 활동했던 경호책임자로 김장흥을, 김상래(1973: 355~358)와 이경남(1981: 157~159)은 김장흥과 김국진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원 홈페이지(2016)에서는 김장흥만을 유일하게 기재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김장흥, 김국진, 광영주를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 1345)를 보면,<sup>1)</sup>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 명단에서 김장흥과 김국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기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기영, 이정석, 서정학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중 서정학의 경우는 각종 자료를 통해 경호책임자로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만, 이기영과 이정석의 경우에는 경호책임자의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경무대 경찰서장이 당연하게 경호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기영과 이정석은 경무대 경찰서장만을 담당하고 김장흥이 대통령 경호책임자로 계속 활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무대 비서관이었던 김상래(1973: 356~357)는

1)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1973: 1345)는 창덕궁 및 경무대 경찰서장의 명단을 청와대 경비과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59호(1949년 2월 23일)에 의해 창덕궁 경찰서가 경무대 경찰서로 개칭된 이후부터 대통령 경호 업무가 본격화된 점에서 창덕궁 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변종현(邊宗鉉)과 황남훈(黃南勳)은 제외하였다.

“김장흥씨는 신입이 두터워서 항상 그림자처럼 이박사를 따라다녔고, 그만큼 출세도 빨랐다. 얼마 후 김씨는 경무관으로 승진되어 이 박사의 경호만 전담하고 경찰서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광영주 이후에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임명된 남태우도 경찰서장이었지만, 광영주가 계속해서 경호 책임자로 활동했음에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볼 때, 제1공화국에서 실제로 대통령 경호를 수행했던 경호책임자들은 총4명이며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광영주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역대 경무대 경찰서장

순번	경찰서장명	재임기간	역할
1	김장흥(金長興)	1949.3.23~1951.7.9	경호책임자
2	이기영(李起榮)	1951.8.27~1952.2.13	경찰서장
3	이정석(李丁錫)	1952.2.13~1952.10.11	경찰서장
4	서정학(徐廷學)	1952.10.11~1954.7.21	경호책임자
5	김국진(金國振)	1954.7.21~1956.7.26	경호책임자
6	광영주(郭永周)	1956.7.26~1957.6.15	경호책임자
7	남태우(南泰祐)	1957.6.15~1960.5.12	경찰서장

(자료: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1345 재구성)

### 1) 제1대 경호책임자 김장흥(金長興)

서울 출신의 김장흥(1909~1958)은 “경무대 경찰서장에는 28일 부 김장흥 총경이 임명되었는데 전기 김(金) 총경은 해방 후 금일까지 대통령 호위를 하여 왔다(동아일보, 1949년 3월 13일)”라는 내용처럼 경무대 경찰서장이 되기 전부터 이승만의 경호를 맡고 있었다. 제1공화국 시절 경무대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세종로일번지(世宗路一番地)』에 언급된 경호책임자 김장흥은 항상 대통령 주변에 머물렀으며, 침실 주변에서 밤을 새는 임무까지 도맡았다고 한다(박성환, 1969: 95). 이런 노력으로 대



통령의 신뢰를 얻은 김장흥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 경무대 경찰서장이자 대통령 경호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서장에서 물러난 후에 한동안 경호책임자만을 전담하다가 1952년 치안국 부국장을 거쳐 1954년 치안국장을 역임했고, 1956년 강원도지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 2) 제2대 경호책임자 서정학(徐廷學)

경기도 출신인 서정학(1917~2005)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해방 직후에 경찰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무대로 파견되었는데, 당시 경호원으로 같이 근무했던 김정욱씨는 대통령이 경무대로 거처를 옮길 때 경찰 측에서 자신과 함께 서정학 경무관이 가게 되었다고 밝혔다(이근미, 2001: 409). 경무대로 파견된 이후에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 경무대 경찰서장을 역임하였고, 1954년 대통령의 방미 때도 “경호(警護) 서정학(경무대 경찰서장), 김국진(총경), 유훈(경감)(경향신문, 1954년 7월 22일)”이라며 동행했다. 경무대 경찰서장 이후에는 1956년 서울시 경찰국장, 1957년 치안국장, 1958년 강원도지사로 취임했다. 그는 “최고단자에 까지 이른 김도 7단의 관록에서 베어난 명량(明朗)하고 과감(果敢)한 성격이 씨(氏)를 더욱 믿음직스럽게 한다(한국명사대감편찬회, 1958: 140).”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 3) 제3대 경호책임자 김국진(金國振)

서정학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국진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경무대 비서관이었던 김상래(1973: 357~358)는 그에 대해 “돈암장 시절부터 줄곧 이박사 승용차를 운전해온 경관이다. 김씨는 이 박사가 환국할 당시 경찰학교 소속 순경이었는데, 이박사가 조신히텔에 여장을 풀 때 경비를 위해 파견되었다가 그대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로 고위 공직자와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약 3만 명이 넘는 인물들의 신원조사 카드를 만들었고, 이를 인사 기용에 활용하는 등 행정 보좌의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국진은 1956년 7월 26일 자로 곽영주에게 경무대 경찰서장 자리를 내어주고, 이후 전라남도 보안과장으로 발령받았다.

#### 4) 제4대 경호책임자 곽영주(郭永周)

곽영주(1924~1961)는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해방 이후 수도경찰학교를 수료하고 경사로 근무하던 중 1947년 10월에 경무대 경비경찰로 파견되었다. 경사 시절에 “총을 잘 쏘아 이 박사의 승용차를 에스코트하는 지프에 타고 집총하고 다니던 경호관(김상래, 1973: 358)”이 되었고, 뛰어난 사격실력을 선보여 ‘명사수 곽(郭)경사’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이경남, 1981: 148; 158). 이후 경위와 경감을 거쳐 1956년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통령 경호책임자로 활동했다.

이상으로 제1공화국의 제1대부터 제4대까지 경호책임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제3공화국 이후의 경호실장·경호처장과 달리 그 이름조차 경호 관련 자료 및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제1공화국 전반기의 대통령 경호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나머지, 당시 경호책임자들에 대한 활동을 묵과하고 그들의 존재마저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비록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가 남긴 역사적 흔적이 공보보다 과가 더욱 크게 부각될지라도 역사 속에서는 반성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책임자는 어떠한가. 제2공화국 때 대통령 경호는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 및 경호책임자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식을 극복하기에는 짧은 기간 등을 비롯하여 여러 모로 역량이 부족했다. 실제로 1960년 6월 28일에 “대통령 신변경호를 위해 특설된 경무대 경찰서를 폐지(경향신문, 1960년 6월 29일)”할 정도로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견제가 심했던 상황이었고, 이에 경호책임자라는 별도의 직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물론, 뒤에서 다루게 될 제2공화국 대통령경호대(大統領警護隊)의 대장(경감)이 경호책임자의 역할을 대신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처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다.

### 3. 경호 인식 속의 정치권력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책임자가 발단이 된 한국 경호의 정치권력 인식은 오늘날 날까지도 잔존한다. 물론 제1공화국 시절에 근무했던 경호 관련 종사자들이 탄압을 당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인식은 제1공화국과 근접한 시기에 더욱 강하게 작용

되었다. 실제로 제2공화국에서 제1공화국의 경호 관련 종사자들을 대부분 사직시켰고, 그들이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비리 여부까지 조사하였던 상황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58년까지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김정옥씨는 “경무대에서 근무한 사람은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옥석을 가려야지, 무조건 경무대에서 근무했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건 부당한 일이죠. …4.19 이후 부정축재자를 소급해서 찾았지만 경무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이근미, 2001: 416).”라며 정치권력 인식으로 인해 겪었던 피해 상황을 토로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금은 감소되었지만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호와 정치권력 간의 상호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경호의 정치권력 인식은 강한 자극을 받았던 대중들을 통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광래(2012: 269)도 향후에 대통령이 경호실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치권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호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1·2공화국이 처했던 정치적인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의 한국 상황이 정치적 안정과는 자못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와 연결되었던 경호 분야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과 함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 된 오늘날까지도 대통령 경호 관련 종사자들을 정치권력과 관련짓는 대중들의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경호 속의 정치권력 인식이 한국인들의 권력지향적인 사고와 맞물려 최근까지도 청와대 경호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 III.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대통령경호대

#### 1. 제1공화국의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

제1공화국에서는 내무부훈령 제25호로 「경호규정(1949)」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총2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sup>2)</sup> 제1조에서 “경찰경호(警察警護)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除)한 외(外) 본령(本令)에 의(依)한다.”며 경찰 업무로서 경호를 언급하였다. 제2조에서는 “가, 대통령, 부통령 및 외국의 원수. 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또는 외국의 사절. 다, 기타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경호대상자를 제시하고 있다. 즉 「경호규정(1949)」은 경호의 전문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이외의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까지도 경찰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2〉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 관련 주요 법령

연번	공포일자 (법령명)	건 명
1	1949년 2월 23일 (대통령령 제59호)	경찰서 위치 명칭 및 관할 지역 변경
2	1949년 12월 29일 (내무부훈령 제25호)	경호규정
3	1953년 3월 20일 (대통령령 제767호)	경찰서 직제 중 개정의 건
4	1953년 7월 7일 (내무부훈령 제52호)	대통령경호특별수칙
5	1960년 6월 28일 (국무원령 제5호)	경찰서직제 중 개정의 건
6	1960년 9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42호)	경호경찰관배치기준 개정
7	1960년 9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43호)	대통령경호특별수칙 폐지

이러한 경호대상자의 확대가 문제시되었는데, 「경호규정(1949)」이 ‘경찰의 사병화(私兵化)’를 조선했다는 지적에서 나타난다. 사임한지 오래된 전직 장관들까지 ‘경호경찰(警護警察)’을 두었던 상황에서 195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약6천명의 경찰

2) 선행연구 중에서 「경호규정(1949)」을 총26조로 오기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총25조이다.

관 중에 순경(약5천명)의 약10%인 530여명 정도가 요인(要人) 경호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1013~1014). 다시 말해, 제2조에서 규정한 경호대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조항에서 대통령 경호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경호규정(1949)」은 대통령보다 주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에 맞춰졌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호규정(1949)」은 최소라는 점에서 그 존재만으로 큰 의미를 두었지만, 그것이 변용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공화국에서는 대통령 경호에 중점을 두지 않았는가. 김두현(1995: 124; 1996: 48~49)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경호규정(1949)」과 경무대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경무대로 한정한 「경찰서직제 중 개정의 건(1953)」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를 통해 1953년 7월 7일에 공포된 내무부훈령 제52호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은 “제1조 대통령의 경호에 관하여는 경호규정에 정한 외 본 특별수칙에 의한다. 제2조 대통령의 경호는 경무대 관저 및 기타 행차 시에 시간 또는 지역의 제한 없이 이를 적용한다.”며 대통령 경호의 전문적인 업무수칙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호규정(1949)」이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된 데 비해,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은 업무정황에 따라 ‘체포 또는 발포(제5조 2)’와 불응할 경우에 ‘발포(제5조 3)’를 언급하는 등의 강경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에서는 경비구역과 대통령 접견 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담당하는 ‘경비원’이라는 직책을 별도로 두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3조 대통령에 대한 직접(直接) 경호업무는 경무대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약칭한다)이 부책(負責)한다.”라며 경무대 경찰서장의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권한을 명확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제4조 서장은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구역의 설정 및 경비에 관하여 구역(區域) 내 경찰을 종합 지휘(指揮)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 경호 시에 경무대 경찰서장의 종합적인 경찰 지휘권에 대한 법적 권위까지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제1공화국 시절 대통령 경호책임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된 배경 중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의 영향도 적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의 배경에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던 서정학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제1공화

국 시절 높은 지명도를 가진 인사들만을 선별했던 『한국명사대감(韓國名士大鑑)』에서는 서정화에 대해 “경무대 경찰서장으로 재직 시 노(老)대통령의 신변을 보살피서 그 신망(信望)”을 얻었으며, “과거 십여 년 간의 경찰관 생활을 통하여 내외인(內外人)의 가장 초점의 대상이 되어있는 중요한 포스트에서만 활약”한 그의 영향력을 피력한 바 있다(한국명사대감편찬회, 1958: 140).

반면에 제1공화국 직후,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1공화국과 대조적으로 흘렀다. 경호책임자 광영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1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가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제2공화국에서는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국무원령 제5호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1960년 6월 28일자로 폐지되었으며,<sup>3)</sup> 1960년 9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42호로 인해 경호경찰관의 소속이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무부훈령 제143호를 통해서 마침내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까지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의 경호사적 의미는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호규정(1949)」과 다르게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은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1963년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제정되었고 최초로 대통령 경호를 표방하였다. 셋째, 경무대 경찰서장의 권한과 직접적인 경호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넷째, 체포·발포 등의 실제 대응 방침을 포함시켜 대통령 경호의 강경함을 드러냈다. 다섯째, 제1공화국에서 제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던 제2공화국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 2.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

제1공화국이 수립된 후, 대통령령 제59호(1949년 2월 23일)에 의거하여 창덕궁 경찰서는 경무대 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칭된 경무대 경찰서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중앙청 및 경무대 구내를 관할지역으로 삼아서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대통령령 제767호(1953년 3월 20일)에

3) 선행연구 중에서 경무대 경찰서의 폐지일자를 6월 29일로 오기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6월 28일이다.

따라 세종로 1번지 중앙청이 삭제되고, 경무대 경찰서의 관할구역은 경무대로 한정되었다.

경무대 경찰서의 소속 인원은 4백여 명이었으나 1956년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경찰관 감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경향신문, 1956년 10월 16일) 1957년부터 3백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김상래(1973: 355~356)는 이 시기에 대통령 경호만을 전담하는 경호계(警護係)가 별도로 조직되었으며, 여기에 소속된 20~30명 정도의 인원들은 확실한 신분, 체격과 인물, 무도 능력 등을 고루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하였다. 즉 1957년부터 경무대 경찰서는 주로 경무대의 경비임무를 맡았고, 대통령의 신변 경호는 소수정예로 구성된 경호계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포괄적인 경비 업무와 달리 경호 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였던 추세는 대통령령 제1477호 「내무부 직제 중 개정의 건(1959)」에서 “제5항 중 「경비」 다음에 「경호」를 가하고”라며 경비에 이어 별도로 경호를 추가하였음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의 대통령령 개정에 이어 대통령령 제1478호 「내무부 직제 중 개정의 건(1959)」에서 “「총경 22인」을 「총경 27인」으로”라고 증원된 5명의 총경 가운데 ‘경무대 경호대’에 배정된 1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원내역은 1959년 4월 20일에 공포된 대통령령과 관련된 내부 자료인 「내무부 직제 중 개정의 건(안)」에서 발견했는데(국가기록원, 1959년 4월 15일), 이를 통해 경무대 경찰서 내에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무대 경호대’의 흔적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이후, 1960년 6월 28일자로 경무대 경찰서는 국무원령 제5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만들어진 경무대 경찰서는 그의 퇴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1공화국과 달리 제2공화국에는 어떤 조직이 있었을까.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김두현(1995: 124)을 비롯해서 대부분 1960년에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청와대경찰관파견대’가 설치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2016)에서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경호대(1961.11.18.~1962.3.23.)’가 있었다고 제시했는데, 그 존립기간을 볼 때 5.16이후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에 설치된 경호대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1960년에 제2공화국의 새로운 대



(자료: 경향신문, 1960년 8월 13일)

〈그림 1〉 대통령경호대 발족

통령과 함께 대통령 경호기관의 발족이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즉 1960년 8월 12일에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치안국에서는 언론을 통해 ‘대통령경호대(大統領警護隊) 발족(發足)’에 대해 공포했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경감을 대장으로 하는 60명의 경찰관이 대통령관저에 파견될 것(경향신문, 1960년 8월 13일)”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활동은 대통령이 경무대로 옮긴 8월 1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제2공화국에 왜 많은 경호 인력이 필요한지를 추궁하는 아래 내용에서 7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대통령이 경무대로 이사를 갔다. 경무대를 대통령관저로 그냥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신변과 관저를 경호하기 위해 70여명의 경찰관이 항시 배치되고 그 집무를 돕기 위해 20명의 비서가 직제 상 따르리라고 하니 이승만정부시대의 저 으리으리한 경무대 경찰서, 경무대비서가 어쩐지 연상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자발적인 존경을 받는 대통령의 신변의 불안을 느낄 리 만무한데 무엇 때문에 70여명의 경비경찰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좀처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경향신문, 1960년 8월 15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내용처럼 나중에 ‘청와대경찰관과 견대’로 변경되었겠지만, ‘청와대경찰관과 견대’는 1960년에 이루어진 제2공화국의 수립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경무대’가 ‘청와대’로 개칭된 1961년이나 활동이 가능했다. 이는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 관저로 계속 경무대를 사용하는 것조차 논란이 되자 ‘과거 십(十)여 년 간 독재정권의 아성 같은 인상(경향신문, 1960년 12월 30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0년 12월 30일에 ‘경무대(景武臺)’를 ‘청와대(靑瓦臺)’로 개칭하고 1961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청와대경찰관과



전대'와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경호대(1961.11.18.~1962.3.23.)'와는 달리, 제2공화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이 공포되었으며 그 활동기간은 적어도 1960년 8월부터 12월까지였던 것으로 본다.

더욱이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후, 제1공화국과 차별화하여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음에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된다. 즉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이라는 구상 자체가 대통령 경호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 창설 이전에 이미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제2공화국에서 공포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은 한국 경호사에서 새롭게 각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 3. 경호 인식 속의 경호경찰

제1공화국에서 경찰은 일반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것 외의 경호 업무도 담당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지만 제2공화국에서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고, 당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대통령 경호를 통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호규정(1949)」을 통해 정계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경호까지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경호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이 주시되는데,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에 대한 직업 소개를 다룬 기사도 경호원의 자격에 대해 신장·건강·외모 등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총경급의 자질(조선일보, 1959년 2월 18일)”을 명확하게 밝힐 정도였다. 그러나 경찰의 경호업무 담당에 대한 인정과는 별개로 ‘경호경찰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는 당시 서울시경 측이 ‘신변경호경찰 왜 감원하지 않는가’라며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에 대한 감원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드러난다. 정계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경호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경찰에 관하여 “경찰관 감원 선포와 때를 같이 하여 시경 내에서는 정부요인 정계요인 그 밖에 저명인사의 신변경호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의 숫자를 대폭 감소하여야 한다는 공기가 높아지고 있다(경향신문, 1958년 10월 31일).”면서 감원을 촉구했던

것이다.

제1공화국과 달리 제2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통령 경호에도 많은 제재가 가해졌다. 제2공화국에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무장 여부를 언급하는 등 경호 중에 폭력적인 부분을 억제시키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취임 이래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던 윤대통령의 환영 행사에 대해서 “윤대통령의 경호에는 무장(武裝)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당(當)하여 구 정권하에서의 경비(警備)와 대조를 이루었다(경향신문, 1960년 8월 30일).”라고 했고, 제1공화국 시절의 집총(執銃) 경비를 뜻하는 ‘5호(五號) 경비’가 제2공화국에 다시 등장한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처럼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비교와 견제는 계속되었다.

또 오호(五號) 경비 등장. 대통령경호(大統領警護) 집총(執銃) 경관으로 말썽. 이(李) 독재정권 당시 이 박사가 거리에 나올 때마다 경찰관이 집총하여 연도경비를 해오던 어마어마한 경비가 24일 유엔데이 경축식을 전후하여 시대 간선도로에 다시 등장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오(五)호 경비라고 불리우는 이 경비태세는 이 정권 때 이박사가 행차할 때마다 취해진 경비방식으로 4.19 이후엔 자취를 감추었다(경향신문, 1960년 10월 24일).

제1·2공화국 전반에 걸쳐서 변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담당한다는 점과 함께, 대통령 경호를 위시한 경찰의 권세였다. 반면에 대통령 경호를 둘러싼 경찰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군을 이탈시켰는데, 장기봉(2001: 12~13)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의 창설 배경에서 군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점을 제1·2공화국 시절에 경찰이 전담했던 대통령 경호를 막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즉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 경호의 수뇌부를 군인들이 차지한 것에는 군사정권의 도래에 따른 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 경호를 전담했던 경찰 권력에 대한 미묘한 반감이 가지고 온 역풍의 측면도 적지 않았다. 이렇듯 역사 속에서 제1·2공화국의 경찰과 제3공화국의 군이 경호와 관련을 맺으면서, 오늘날 한국 경호에 대한 인식 속에 경찰과 군이 포함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각종 경호 관련 기관의 교육과정 등에서 군/경호, 경찰/경호가 연관되는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다.

## IV. 결 론

한국 경호사에서 제1·2공화국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물론 제1·2공화국의 경호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따른 파장과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그 활동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홍·제2대 서정학·제3대 김국진·제4대 곽영주이다. 하지만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공포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은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 대통령경호대를 경호사의 일부분으로 조명해야 하겠다. 또한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의 활동이 한국의 경호 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 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 미친 영향도 주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온 제3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반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1·2공화국 경호사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할지라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것의 역사적

인 의미를 반성에서 비롯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 외에도 제1·2공화국의 경호사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경호학계에서 사회과학 연구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학문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경호학이 더욱 견실해지기 위해서는 경호사를 비롯한 인문학적 접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관보 제288호 (1950년 2월 21일)  
 관보 제857호 (1953년 3월 20일)  
 관보 제928호 (1953년 7월 7일)  
 관보 제2292호 (1959년 4월 20일)  
 관보 제2612호 (1960년 6월 28일)  
 관보 제2672호 (1960년 9월 15일)  
 김두현 (1995). 경호학개론. 서울: 도서출판 쟁기.  
 김두현 (1996). 경호경비법. 서울: 와이제이.  
 김상래 (1973). 경호(警護).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② 경무대사계. 서울: 중앙일보사.  
 김창호 (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_\_\_\_\_ (2001). 신라시대 경호제도에 관한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 65-82.  
 김형중 (2013).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왕실호위 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139-176.  
 박성환 (1969). 세종로일번지. 서울: 국민문고사.  
 박장규 (2010). 한국경호사. 인천: 도서출판 진영사.  
 이경남 (1983). 부(副)부통령 광영주와 동(東)카포네 이정재. 신동아 1983년 1월호, 146-175.  
 이근미 (2001). 경무대 경호원 김정옥씨가 지켜본 인간 이승만. 조건조선 2001년 11월호, 408-417.  
 이민형·이강문·송상욱·김진환 (2008). 한국경호사강의. 서울: 진영사.  
 이성진·김의영·이종환 (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13-429.  
 이성진 (2008). 조선후기 호위제도의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229-241.  
 장기봉 (2001).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철원·김상진 (2006).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정세와 경호조직 변천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 291-308.  
 조광래 (2012). 대통령 경호실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경찰사(Ⅱ).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85). 한국경찰사(Ⅲ). 내무부 치안본부.

한국명사대감편찬회 (1958). 한국명사대감. 서울: 한국연감사.  
 The Heritage Foundation (2002).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장성민 역). 서울: 김영사(원진은 2000년 출판).

## 2. 기타

국가기록원 (1959, 4, 15). 「내무부 직제 중 개정의 건(안)」. 885-892.  
 경향신문 (1954, 7, 22). 이대통령 수원(隨員) 18명 여권작성. 1면.  
 경향신문 (1956, 8, 26). 화제와 인물: 열성(熱誠)에 기대(期待), 서정학(徐廷學). 2면.  
 경향신문 (1956, 10, 16). 15일로 대체적 완료, 전국경찰(全國警察) 감원(減員). 3면.  
 경향신문 (1958, 10, 31). 신변경호경관 왜 감원하지 않는가. 2면.  
 경향신문 (1960, 6, 29). 경무대서 폐지. 3면.  
 경향신문 (1960, 8, 13). 제2공화국 초대대통령에 윤보선씨, 1면.  
 경향신문 (1960, 8, 14). 윤대통령 경무대로 14일 하오(下午)에 이사, 1면.  
 경향신문 (1960, 8, 15). 시평: 걸어다니는 대통령의 출현. 1면.  
 경향신문 (1960, 8, 30). 법질서 유지하라. 1면.  
 경향신문 (1960, 10, 24). 또 5호 경비 등장. 3면.  
 경향신문 (1960, 12, 30). 경무대를 청와대로. 3면.  
 대통령경호실 (2013). 대통령경호실 브로슈어.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2016). 2016년 4월 26일 검색.  
 대통령기록원 홈페이지 (2016). 2016년 4월 26일 검색.  
 동아일보 (1949, 3, 13). 경무대 경찰서장에 김장홍 총경임명. 2면.  
 동아일보 (1954, 7, 22). 경무관급 이동 2면.  
 동아일보 (1960, 6, 7). 횡설수설. 1면.  
 조선일보 (1959, 2, 18). 국가원수의 경호원이란 직업: 미국의 경우. 3면.

【Abstract】

**An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Focused o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one of the important periods, deserves special emphasis until now. But Compared with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is inferior. Although security service history excluded the 1st and 2nd Republic.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two points about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Firstly, the chief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st Republic were Kim, Jang-Heung · Seo, Jung-Hak · Kim, Kuk-Jin · Kwak, Young-Joo. Secondl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be specified in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for the first time. Before the 1st Republic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services when they adopted the first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on December 29, 1949, which comprised 25 articles. But this law was only focused on presidential security and promulgated the law more than 10 years ago than law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963. Deplorable in this law was declared by statute on July 7, 1953 from the 1st Republic, but repealed in 1960 after the 2nd Republic. Thirdly, 2nd Republic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with the new government has been formed. In spite of this organization can not be kept for a long time, 2nd Republic attempted to professional forms of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The research of secret service history must continue to advance for academical learning.

**Key words :** 1st · 2nd Republic,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security service history